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이홍민 의원)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의 안 번 호 | 20-76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|

발의년월일 : 2020. 5. .

발의자 : 이홍민, 조영덕, 강명숙, 김기석,
김성희, 김종선, 신종갑, 이민석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9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추천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(안 제1조)
- 나. 추천대상 등(안 제2조)
- 다. 추천요청(안 제3조)
- 라. 자료의 요구 및 제출(안 제4조)
- 마. 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(안 제5조)
- 바. 서면 통보 등(안 제6조)
- 사.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(안 제7조)
- 아. 의견제시(안 제8조)

3. 관계법령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91조제2항

4. 조례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입법예고 : 2020. 5. 27. ~ 6. 1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추천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추천대상 등)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고 한다)의 추천대상은 「지방자치법」 제9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장이 임용권을 가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(이하 “의회사무국”이라 한다) 직원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한다.

제3조(추천요청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고 한다)은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제2조에 따른 직원에 대한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제4조(자료의 요구 및 제출) ①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개인정보 및 승진에 영향 등을 미칠 수 있는

자료는 예외로 한다.

제5조(대상자 선정 및 추천)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

② 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할 직원을 추천할 때에는 구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.

1. 추천하는 직위에 직렬·직급에 적합한 구 소속 공무원
2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7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공무원

제6조(추천대상자 반영) 구청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) 구청장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사운영을 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관 계 법령)

지방자치법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91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)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.

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2. 11., 2013. 7. 16.>

1. 별정직공무원
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

비용주제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

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|
| 작성자 이름 | 행정관리국 총무과 전견숙 |
| 연락처 | 02-3153-8212 |